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40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위성곤・이동주・윤재갑

신정훈 · 어기구 · 허 영

이용빈 · 김성환 · 김영진

서삼석 · 최인호 · 이원택

윤준병 • 이은주 • 이개호

김승남 · 김정호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0.5. 시행)에 따라 기존 9개 직접지불제 중 6개 직접지불제를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에 기준연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에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등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요건으로 규정됨.

그런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직접지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이 법 개정 전에 직불금의 대상이 되었던 농지등이 일부 제외되어 농촌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의 경우 당시에도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상 당하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ㅣ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 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등) ①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u>.</u>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	
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나. (생 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
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 증명하는 경우</u>
가.・나. (현행과 같음)
)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 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나. (생 략)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

<u>경우 또는 20</u>
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되
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3

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경우 또는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가 이용한 농지등으로서 그 기간 중 농 업에 이용되었음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 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